고용보험법

총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보험료

고용보험기금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보칙

총칙

목적(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 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2조)

1.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에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5.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임금으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홍 모

총칙

보험의 관장 (3조)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고용보험사업 (4조)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호 무

국고의 부담(5조)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총칙

보험료(6조)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호 무

총칙

고용보험위원회 (7조)

① 이 법 및 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국가공인자격 김승호

총칙

적용범위(8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제외사업 →시행령 2조.

1.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생략

전국직업방문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것이자만사 기운 법

총칙

적용제외근로자(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직업상담사 김 호 무

소정근로시간이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생략

피보험자의 관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13조)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호 무

피보험자격의 상실일(14조)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의 관리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15조) – 생략

이직의 확인 (16조) –생략

피보험자격의 확인(17조) – 생략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18조)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kcdcc
직업상담사 김 호 무

시행규칙 14조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19조)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9.3.12>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②~⑤항 생략.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20조~26조)

*고용창출의 지원(20조)

*고용조정의 지원(21조)

*지역고용의 촉진(22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23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24조)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25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26조)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호 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27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29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30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31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1.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산 기술지원 및 평가사업

2.기능.기술 장려 사업 및 자격검정 사업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건설근로자 등어 | 직업능력개발 지원(32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등(33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34조)

*업무의 대행(35조)

이 조항에서 정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자 (시행령57조)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능대학 / 직업능력개발단체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daum.net/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호 무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종류(37조)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호 수

수급권의 보호 (38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실업급여의 적용연장(39조)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실업급여)을 적용한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2급 오 부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불가피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로 실직한 상태에서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일용근로자는 앞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 동안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의 신고(42조)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③ ④항 생략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호 무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의 인정(44조)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④ 생략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daum.net/jobcollege
전이사 김 홍 문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45조)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⑤**기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시행령68조)**

http://cafe.naver.com/jobcollege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일액(46조)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호 무

45조 46조 요약

지급액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

1일 최고액 : 4만원

1일 최저액 : 1일 최저임금(최저기초일액)의 90%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47조)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필기 모임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48조)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③ 생략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기기간(49조)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정급여일수(50조)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홍 무

- 지급일수

가입기간 /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51조)

개별연장급여(52조)

특별연장급여(53조)

훈련연장급여 : 연령,경력등을 고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자 . 60일 내에서 연장가능

특별연장급여 : 실업의 급증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의 범위내서 연장지급 가능. 모든 사람에게 해당.

한국직업상담사회
직업상담사 김 오 부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57조)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2급 필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급여지급의 제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58조)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가.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한국직업상담사회
직업상담사 김 호 무

고액 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59조) :1억 이상 3개월 지급유예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지도의 거부에 따른 급여지급의 제한(60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취업을 거부한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지급의 제한(61조)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62조) :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상당한액수 이하 징수가능.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시행령 개정 2010.2.5 이후 재취업자부터 적용

1지급대상 :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 잔여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2.지급제외 : *최종 이직한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하청업자등 이직전 사업주와 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대기기간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unsel
직업상담사 김 응 모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시행령 개정 2010.2.5 이후 재취업자부터 적용

3.지급기준 :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잔여급여일수의 1/2

- 단,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급여일수의 2/3 지급

*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취업(자영업)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보두

4.지급절차 :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는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사실관계확인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요구 가능)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65조)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한국직업상담사회
직업상담사 김호무

광역구직활동비 (66조)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하는 경우에 지급.** 금액산정은 노동부령.

*사업장의 사업준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거리 이상일 것.**(수로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본다)**

이주비 (67조)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하여 이주하는 경우 대통령이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70조)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개정 2007.12.21>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급여액 (시행령 95조) : 월 50만원.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은 일수계산.**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2급 공부방

육아휴직급여

취업의 신고 등 (72조)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급여의 지급제한 등 (73조)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직업상담사회
cafe.naver.com/jobcollege

육아휴직급여

요약(70조~74조)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조건)**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 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산전수 휴가기간 90일과 중복기간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 제외)을 부여 받지 아니하고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홍 모

☞**육아휴직급여액 : 월 50만원,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은 일수계산**

☞**신고등** : 육아휴직급여기간중 이직 또는 새로 취업(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제외)하거나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수령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지급제한등** :육아휴직급여기간중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시점부터 지급 정지. 사업주로 부터 금품수령의 경우 그 금액만큼 감액 지급 가능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그 날부터 지급 정지.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등(75조)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07.12.21>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지역사단사회
http://cafe.naver.com/jchcollege
지역사단사회보호부

수급권 대위(76조)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금액과 지급절차 (76조)

①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한국경영사관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김 호 무

급여등의 상.하한액(시행령 101조)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4.30>
1. 상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다만,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하한액 :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요약

☞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 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휴가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휴가급여등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휴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지급금액과 절차**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 (휴가시작한 날 기준 산정)

*상한액 : 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405만원 초과시는 **405만원**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계산)

*하한액 : **최저기준액(최저임금액)**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일수계산)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호 부

고요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설치**

*기금은 보험료와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등으로 조성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 세부상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따른다.

***기금의 용도** : 1.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2.실업급여의 지급 3.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등의 지급 4.보험료의 반환 5.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업무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그 밖의 필요한 경비(보험사업의 관리운영경비. 기금의 관리운영경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위탁수수료지급금)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호 무

*기금운용계획 :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

운용의 결과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거쳐 공표

***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과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적립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배 이상 1.5배 미만.

실업급여 : 연말적립금이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미만**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원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

*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심사관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정지시킬 수 있다)

한국직업상담사회
직업상담사 김 호 무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재심사를 하기 위해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근로자대표 사용자 대표하는자 각1명이상을 포함 **15명 이내.** 위원중 2명은 상임.

*재심사의 상대방은 원처분을 내린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보칙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산후 휴가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직업상담사회
http://cafe.naver.com/jobcollege
직업상담사 김 호 무